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 10. 4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1996. 10. 4

다. 상 정 일 자 : 제5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96. 10. 17)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병일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관내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던 방법원들을 '96년 8월 1일 구 본청에 복귀 조치함에 따라 부서별, 동별 정원을 재 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본청 : (현) 449명 ⇒ (조정) 435명 ▷ 감 14명

○ 동 : (현) 264명 ⇒ (조정) 278명 ▷ 증 14명

※ 방법원 18명중 14명을 11개동에 배치하고 잔여 인원 4명을 민원봉사실, 환경보호과 각 2명씩 재배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사하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규정에 의하여 당구 소속 고용직 공무원인 방법원 18명이 그동안 사하경찰서 관할 파출소에 파견 근무하다 '96. 8. 1부로 원대 복귀함에 따라 경노무 업무 수요가 많은 구 본청의 일부부서 및 동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 조례안과 같이 시행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인력의 배치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 김신우 의원 : 우리구 공무원 정원은 주민대비 1인당 담당인구수가 1,459명으로 중구 및 서구등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되는 것은 출장소 당시부터 지금까지 구세 성장을 감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정원 증원계획은?

▷ 내무부 증원억제 방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볼때 증원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우리구 재정자립도등을 감안 인건비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 김상수 의원 : 동별 배치기준의 근거는 무엇이며 부서장 의견 반영 결과는 무엇인가?

▷ 동별 특수성을 감안 신축성 있게 조정하였으며, 내근업무보다 주로 생활민원 등의 보조업무에 근무하고 있음.

○ 김홍산 의원 : 상정된 정원조례안의 근거는 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된 것인데 조례 개정절차에 있어 정원조례와 상호 연계가 되지 않아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고용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은 경찰서에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명시한 것이지 강제규정은 아님.

○ 김 인 의원 : 방법원 복귀문제는 근무처 및 직명문제와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정비가 우선 선행되고 나서 정원조례 개정후 동별 배치하여야 당초 채용당시 조례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 현재까지 동별 지원근무 형태로 배치하였으며, 정원조례 개정후 사후 정식발령 조치 할 계획임. 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정비는 총무과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나, 아울러 정년문제와 관련하여 복합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여타구와 보조를 같이 하면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임.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